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문진석·정성호·서영석

이정문 · 김윤덕 · 이연희

안태준 • 이성유 • 복기왕

이재관 · 강훈식 · 정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.

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 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51조제4항 신설).
- 나.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52조제5항 신설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 한다. 제3조(분기별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2 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	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
	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
	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
	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
	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
	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
	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	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
및 국회제출) ① ~ ④ (생	및 국회제출) ① ~ ④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
	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분
	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
	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	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
	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
	<u>한다.</u>